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6호: 2022년 10월

mazars



Content

- 04** 연간 주요 세법개정안
- 11**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점검분야 사전예고
- 12** 감사인 지정제도 및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 14** 주요 세율 및 4대 보험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세법 개정사항

연간 주요 세법개정안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 1)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 이자 ·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과세표준	현행
2억원 미만	10%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개정안
5억원 미만	20% (10% for SMEs)
5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

*지방소득세 제외

국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합니다.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의 요건이 변경됩니다.

현행: 지분을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개정: 지분을 10%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 현행: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개정: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100%로 변경없음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사항

연간 주요 세법개정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특정국가에서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당기 개정안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제도의 운용 방식은 여러 국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적인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를 위한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이행체계 등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는 기업의 범위가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에서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 대상인 제출자료에 현행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에 더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추가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제출의무 면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면제범위 추가 내역

-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추가
- 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사항

연간 주요 세법개정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2023년 소득부터)

구분	현행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적용	적용기간(5년) 폐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23년 국내 최초 근로제공분부터)

Reduction period	현행	개정안
외국인 기술자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과 50% 소득세감면 중 선택가능	5년간 소득세 감면	10년간 소득세 감면

소득세율 조정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지방소득세 제외

세법 개정사항

연간 주요 세법개정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2024년 1월 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월 1회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 1회	월 1회

주거비 부담경감 (2022년 연말정산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월세세액공제	최대 12%	최대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간소화 (2023년 1월부터 적용)

(단위: 원)		현행			개정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200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	100	100	100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 공연등	100	-	-		-

세법 개정사항

연간 주요 세법개정안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2023년 1월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연 400만원)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심사 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1)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2)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3)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의 총 4가지 영역에 대해 2023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외부감사법 개정('18.11.1)에 따라 2022 사업연도부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모든 종속기업(비외감회사 등)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연결범위를 판단하여 연결재무제표 등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 악화가 예상될 때 종속 및 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없이 작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거액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전 규정에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회사들을 연결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들은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과규정에 따라 회사는 2022년1월1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역시 강화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특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의 지적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하여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 건설업계에 경기하락 및 그에 따른 공사지연과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여 총공사예정원가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진행률 산정 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사수익이 과대계상 될 수 있습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인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참고하면서, 진행기준 적용시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우 매출액(공사수익) 대비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및 계약부채(공사선수금) 등의 비율,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제외)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적정성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손상사건(채무자의 파산이나 부도,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금융자산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한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를 파악하는 등, 손상사건 발생 여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는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미수금 등 비중, 거액의 대여금 존재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우려가 제기되었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는 등 활동별 현금흐름 분류가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비중,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분석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감사인 지정제도 및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0월 14일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였고,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1월 11일경에 본 지정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소유·경영미분리 대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비상장사의 경우에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월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면서 동시에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됩니다.

2022년에 2021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고 지정대상선정일인 2022년 9월 1일까지 요건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년에 지정을 받은 회사가 지정이후 소유·경영미분리 요건 등 지정사유를 해소하여도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유 경영미분리 요건은 지정대상선정일 이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 절차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 본통지 후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보수협약 및 독립성이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선임과 달리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금감원에 선임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사와 동일하게 금감원에 체결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이후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감사인 지정제도 및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지정제도 변경사항 (상장사 관련 참고사항)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회사는 전기에 지정받은 감사인을 당기에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및 지정감사인 예시

년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정사유	(가) 지정사유 발생 (3년)	(나) 지정사유 발생 (3년)			
현행		감사인 A	감사인 B		
		총 지정기간 4년			
변경		감사인 A		감사인 C	
		총 지정기간 4년			

핵심 지표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
10억원 초과	49.5%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4.2%
3000억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월 평균보수 X 3.495% X 1.1227	월 평균보수 X 3.495% X 1.1227
국민연금	월 평균보수 X 4.5%	월 평균보수 X 4.5%
고용보험	월 평균보수 X (0.9% + 사업규모에 따른 추가보험료율 [0.25%~0.85%])	월 평균보수 X 0.9%
산재보험	월 평균급여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0.7%~18.6%)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	월 평균보수의 약 9%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료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44,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십 28,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6,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2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심현호, 허영, 박동원, 심민규, 김온유, 정한움